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및 제조혁신정책과, 제조혁신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4, 6급2)을 증원하고, 소상공인의 신기술 도입, 스마트화 등 선제적 정책개발·대응을 위해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하는 등 하부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협력담당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시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평가결과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 1명”을 “홍보담당관 및 미디어협력팀장”으로,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으로, 미디어협력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0.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④ 미디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언론매체 보도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미디어 협력에 관한 사항

3. 브리핑, 전자브리핑 등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정책 대외 발표사항 기획 및 관리

4. 언론 광고, 프로그램 제작 등 미디어 활용 홍보에 관한 사항
5. 간담회, 설명회 등 대언론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6.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및 온라인 모니터링·분석 및 대응
7. 인터뷰, 기고, 출연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8.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실적 관리 및 정책소통 평가 관리
9. 기타 내·외신 대언론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3.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
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연구 및 평가
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연구
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1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12.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
13. 법령안의 협의·심사 및 법령해석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제5조의 제목 “(해외시장정책관)”을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외시장정책관”을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을 “제조혁신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진출 전문가의 양성”을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종합 및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판로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령검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유망 기업·품목의 선정·지원”을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의 수립·시행
4.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5.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6. 중소기업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제조혁신 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초고속 통신망 기반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보급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 통신망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산단 지원과제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정책 연계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14. 일터혁신 연계형 스마트공장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16. 스마트공장에 대한 정보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
17. 스마트공장 표준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8. 스마트공장 관련 특허 확보지원 및 사업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19. 중소기업 제조혁신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 20.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에 대한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 21.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결과물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에 관한 사항
 - 22. 노후산단 기반시설 고도화 정책과의 연계 지원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23.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4.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운영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중소기업의 동반해외진출”을 “스마트공장 지역 확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을 “스마트공장 관련 컨설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의 운영”을 “스마트공장 직무재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를 “스마트공장 관련 중

소기업에 관한 금융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해외 연불수출(延拂輸出)관련 금융기관간 협력”을 “제조데이터 가공·분석·유통·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공장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5. 로봇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공장 관련 중소기업에 관한 금융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공장 솔루션 거래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인공지능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17.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관한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1. 스마트공장 설비 고도화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23.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 조성 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통합 정보화 경영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28.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9.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소기업정책관·성장지원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관·글로벌성장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혁신과, 기업금융과, 인력지원과, 판로지원과”를 “국제협력과,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판로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제9조제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소기업 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혁신과장”을 “국제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2.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 참여·협력
3. 외국 정부·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4. 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 수립·시행
6.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8.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10.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
11.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12. 중소기업의 국제화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14.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 및 기술장벽 해소의 지원
- ⑧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제거래 알선 및 해외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중소기업의 장기·단기 수출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분석
5.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관리
7. 판로지원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수출유망 기업·품목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표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해외진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3. 창업활성화 관련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14. 해외 현지 창업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위한 해외거점의 설치·운영
18.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입 · 판로개척 계획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 박람회의 참가 지원
22. 중소 · 벤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23. 중소 · 벤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제품 국외 전시판매시설의 설치 · 운영의 지원
26. 대 · 중소기업의 동반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折衷交易) 대상 품목 추천에 관한 사항
28. 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 지원에 관한 사항
29.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중소기업 해외온라인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 해외 연불수출(延拂輸出)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2. 중소기업 해외 연불수출(延拂輸出)관련 지원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해외 연불수출(延拂輸出)관련 금융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기업의 자본재 및 인프라 수출 관련 금융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로지원과장”을 “판로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운영

제9조제10항제6호(중전의 제7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제13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⑮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제12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중 제조 혁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제2항 중 “벤처혁신기반과, 기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를 “기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인력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창업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수립·시행 및 창업 관련 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3.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6호) 중 “창업 저변확대”를 “예비창업자의 창업 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2.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4.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제10조제5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6. 창조경제 온라인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제10조제7항에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17.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 농·공·상 상생 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산·학·연 지역 연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⑬ 인력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인력수급 효율화 및 인력의 양성사업의 지원
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파견·채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기술사관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7.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영마이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관련 학과 및 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관련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13. 중소기업 인력 활용·공급 동향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1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인식 개선,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및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19.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0.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퇴직인력 및 고령인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23. 중소기업과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24. 기능인력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항(중전의 제11항)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술기반 분야에 대한 예측·분석 및 육성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26.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27.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제10조제11항(중전의 제1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혁신과, 시장상권과”를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육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8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업종별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9.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21.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23.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24.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25.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2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기본계획 수립
3.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운영
4.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거점 마련
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채널별 입점 지원
6.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지원
7.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관련 통계·실태조사·분석, 성과관리 및 점검
8.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9.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신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업종별 스마트상점 적용기술 발굴·보급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동향조사
14.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6.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법인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상품권 확산에 관한 사항

18.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비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영
4.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6.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용
7. 사업조정심의회 운영·지원
8.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지원
9. 일시정지제도의 운영·지원
10.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11.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12.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13.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의 수립
14.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15.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16.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 보완 요청등
17.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료 조사

18. 대기업등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예외 승인
 19.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준수여부 실태조사
 20.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21. 생계형 적합업종 영위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권고 및 권
고 불이행 공표
 22.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2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 제11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
3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
21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1.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22.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23.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지원
 2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제도에 관한 사항
 26. 지역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
 27. 상권활성화 구역 실태조사
 28. 지역상권 상인 교육 전문가 인력 양성

제11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23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혁신과장”을 “지역상권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상권과장”을 “전통시장육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별표 3 총계 “446”을 “465”로 하고, 일반직 계 “440”을 “459”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을 “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7”을 “26”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을 “39”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55”를 “159”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26”을 “134”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1”을 “27”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8 다음에 “운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비서) 1”를 신설한다.

별표 4 총계 “446”을 “465”로 하고, 일반직 계 “440”을 “459”로 하며, 부

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을 “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7”을 “26”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을 “3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7”을 “129”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8”을 “24”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8 다음에 “운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비서) 1”를 신설한다.

별표 5 총계 및 일반직 계 “416”을 각각 “40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4”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4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4”를 신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4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6”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5”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9”를 삭제하고,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 20”를 삭제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28”를 삭제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5 “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7”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8”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7”를 삭제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를 삭제하며,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공업서기 34”를 삭제하며, 운전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2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1”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총계 및 일반직 계 “418”을 각각 “405”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7”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7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1”를 신

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1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6”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5”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9”를 삭제하고,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 20”를 삭제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28”를 삭제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7”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8”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7”를 삭제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를 삭제하며,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공업서기 34”를 삭제하며, 운전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2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1”를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미디어협력팀은 2023년 1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미디어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디어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는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정원 중 11명,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정원 중 3명 및 운전서기 정원 1명은 2023년 1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2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정원 중 1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정원 중 3명 및 운전서기보 정원 중 1명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소상공인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0년 7월 25일까지
2)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0년 7월 25일까지
3) 중소기업정책실 정책평가과	3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1년 7월 25일까지
4)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0년 7월 25일까지
5)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6)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 혁신정책과	6명 (5급 4명, 6급 2명)	2022년 9월 30일까지
7)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 혁신지원과	1명 (4급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생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u>홍보담당관 1명</u> 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u>공업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② ----- <u>홍보담당관 및 미디어협력팀장</u> ----- ----- <u>공업연구관으로, 미디어협력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u>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브리핑 지원 및 전자 브리핑 운영</u>	2. <u>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 · 조정 및 협의 · 지원</u>
3. <u>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 대응</u>	3. <u>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u>
4. <u>언론취재의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5. <u>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 · 협조</u>	<u><삭 제></u>
6. ~ 9. (생략)	4. ~ 7. (현행 제6호부터 제9호

<신 설>

<신 설>

까지와 같음)

10.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④ 미디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언론매체 보도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미디어 협력에 관한 사항

3. 브리핑, 전자브리핑 등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정책 대외 발표사항 기획 및 관리

4. 언론 광고, 프로그램 제작 등 미디어 활용 홍보에 관한 사항

5. 간담회, 설명회 등 대언론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6.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및 온라인 모니터링·분석 및 대응

7. 인터뷰, 기고, 출연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8.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실적 관리 및 정책소통 평가 관리

9. 기타 내·외신 대언론 취재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5. (생략)

16. 법령안의 협의·심사 및 법령해석

17.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20. (생략)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

-----.

1. ~ 1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6. (현행 제20호와 같음)

<신 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3.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

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연구 및 평가

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연구

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1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12.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

⑤ · ⑥ (생략)

제5조(해외시장정책관) ① 해외시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외시장정책관 밑에 해외시장총괄담당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해외시장총괄담당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

13. 법령안의 협의·심사 및 법령해석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5조(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

②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해외시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해외시장정책관을 보좌한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제거래 알선 및 해외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중소기업의 장기·단기 수출 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분석

5.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관리

7. 판로지원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수출유망 기업·품목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표의 해

③ 제조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제조혁신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 제조혁신 관련 지원 정책의 종합 및 조정-----

3.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의 수립·시행

4.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5.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선진기술 동향조사 및 소개

6. 중소기업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및 핵심투자 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법령검토-----

8. -----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9. 중소기업 제조혁신 문화 확

<u>외진출에 관한 사항</u>	<u>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u>10. 해외진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u>10. 초고속 통신망 기반 스마트 공장 공급기술 보급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u>
<u>11.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협의회에 관한 사항</u>	<u>11. 초고속 통신망 기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추진에 관한 사항</u>
<u>12. 소상공인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u>	<u>12. 스마트산단 지원과제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u>
<u>13. 창업활성화 관련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u>	<u>13.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정책 연계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u>
<u>14. 해외 현지 창업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14. 일터혁신 연계형 스마트공장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u>
<u>15.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u>	<u>15.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u>
<u>16.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u>16. 스마트공장에 대한 정보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u>
<u>1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위한 해외거점의 설치·운영</u>	<u>17. 스마트공장 표준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u>
<u>18.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u>	<u>18. 스마트공장 관련 특허 확보 지원 및 사업화 방안 마련에</u>

<u>사항</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u>해외진출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해외시장정책관을 보좌한다.</u> 1. <u>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입 · 판로개척 계획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u> 2. <u>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u>	<u>관한 사항</u> 19. <u>중소기업 제조혁신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연계 · 조정에 관한 사항</u> 20. <u>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개발 정책에 대한 연계 · 조정에 관한 사항</u> 21. <u>스마트공장 기술개발 결과물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에 관한 사항</u> 22. <u>노후산단 기반시설 고도화 정책과의 연계 지원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u> 23. <u>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24. <u>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 · 기획에 관한 사항</u> ④ <u>제조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2. <u>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운영 및 ---</u>
---	---

3. <u>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박람회</u> 의 참가 지원	3. <u>스마트공장 보급 우수사례</u>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u>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진출</u> 지원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4. <u>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의</u> 수립·시행
5. <u>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시장</u> 개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u>로봇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u> 에 관한 사항
6. <u>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u> 지원에 관한 사항	6. <u>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의</u> 운영-----
7. <u>중소기업제품 국외 전시판매</u> 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	7. <u>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u>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u>대·중소기업의 동반해외진출</u> 에 관한 사항	8. <u>스마트공장 지역 확산</u> -----
9. <u>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u> (折衷交易) 대상 품목 추천에 관한 사항	9. <u>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u>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u>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u> 지원에 관한 사항	10. <u>스마트공장 관련 컨설팅</u> -----
11. <u>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u> 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u>스마트공장 직무재개발 지원</u> -----
12. <u>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u> 에 관한 사항	12. <u>스마트공장 관련 중소기업에</u> 관한 금융지원-----
13. <u>중소기업 해외 연불수출(延拂輸出)</u>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13. <u>스마트공장 관련 중소기업에</u> 관한 금융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해외 연불수출(延
拂輸出)관련 지원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해외 연불수출(延
拂輸出)관련 금융기관간 협력
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기업의 자본재 및
인프라 수출 관련 금융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4. 스마트공장 솔루션 거래환
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 제조데이터 가공 ·
분석 · 유통 · 활용-----

16. 인공지능 기반 중소기업 제
조혁신에 관한 사항

17.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관
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
항

18.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
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관
한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
항

21. 스마트공장 설비 고도화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
한 중 · 장기계획의 수립

23.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 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해외시장정책관을 보좌한다.

1.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2.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 참여·협력
3. 외국 정부·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통합 정보화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
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28.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9.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삭 제>

4. <u>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u> <u>의 경제협력 계획 수립·시행</u> 5. <u>삭 제</u> 6. <u>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u> <u>동향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u> <u>시행</u> 7. <u>삭 제</u> 8. <u>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u> <u>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u> 9. <u>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u> <u>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u> <u>자 지원</u> 10. <u>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u> <u>정보의 수집·분석</u> 11. <u>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u> <u>및 실태의 조사·분석</u> 12. <u>중소기업의 국제화 인식제</u> <u>고에 관한 사항</u> 13. <u>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u> <u>지식공유에 관한 사항</u> 14. <u>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u> <u>사항</u> 15. <u>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u> <u>및 기술장벽 해소의 지원</u>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
---	---------------------------------------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
 급으로 하고, 중소기업정책관 ·
성장지원정책관 및 지역기업정
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중소기업정책실에 정책총괄
 과, 일자리정책과, 정책평가과,
 통계분석과, 규제혁신과, 기업
금융과, 인력지원과, 판로지원
과, 재기지원과, 지역혁신정책
과, 지역기업육성과 및 지역특
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
 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생 략)

④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
상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 16. (생 략)

17. 중소기업 인력 활용실태 조

 ----- 중소기업정책관 ·
글로벌성장정책관 -----

 -----.

② -----

 ----- 국제협력과, 글로벌
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판로
정책과-----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1. ~ 15. (현행 제12호부터 제
 16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사 및 분석

<신 설>

<신 설>

18. · 19. (생 략)

20. · 21. (생 략)

⑤ (생 략)

⑥ 통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1. ~ 14. (생 략)

⑦ 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3.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1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16. · 17. (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

20. · 2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중소기업 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12. ~ 15.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⑦ 국제협력과장-----
-----.

1.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2.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 참여·협력

3. 외국 정부·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u>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u> <u>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 · 연구 및 평가</u> <u>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 · 연구</u> <u>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u> <u>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 방문 관리</u> <u>9.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u> <u>10. 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u> <u>1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u> <u>12.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4. 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 수립 · 시행</u> <u><삭 제></u> <u>6.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 · 시행</u> <u><삭 제></u> <u>8.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u> <u>9.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u> <u>10.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 · 분석</u> <u>11.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 · 분석</u> <u>12. 중소기업의 국제화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u> <u>13. 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u> <u>14.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15.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u>
--	---

<신 설>

및 기술장벽 해소의 지원

⑧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제거래 알선 및 해외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중소기업의 장기·단기 수출 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분석

5.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관리

7. 판로지원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수출유망 기업·품목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표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해외진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협의

회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3. 창업활성화 관련 국제 교류
에 관한 사항

14. 해외 현지 창업정책 수립 ·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
업화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교
류를 위한 해외거점의 설치 ·
운영

18.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
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입 ·
판로개척 계획의 수립 · 추진
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
원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 박
람회의 참가 지원

22. 중소 · 벤처 기업의 해외진
출 지원 및 해외진출 중소기

업의 애로 해소 지원

23.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제품 국외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

26. 대·중소기업의 동반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折衷交易) 대상 품목 추천에 관한 사항

28. 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 지원에 관한 사항

29.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30. 중소기업 해외온라인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 해외 연불수출(延拂輸出)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2. 중소기업 해외 연불수출(延拂輸出)관련 지원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해외 연불수출(延

⑧ (생 략)

⑨ 인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인력수급 효율화 및 인력의 양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4.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파견·채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술사관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8.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拂輸出)관련 금융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기업의 자본재 및 인프라 수출 관련 금융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삭 제>

-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9. 영마이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관련 학과 및 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관련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14. 중소기업 인력 활용·공급 동향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16.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
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인
식 개선, 취업 연계에 관한 사
항 및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20.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중소
기업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1.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
에 관한 사항

22. 퇴직인력 및 고령인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소기업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24. 중소기업과 소관 공공기관
의 채용 확산을 위한 지원 정
책의 수립·시행

25. 기능인력의 취업지원에 관
한 사항

26.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⑩ 판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⑩ 판로정책과장-----

분장한다.

1. ~ 4. (생략)

5.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6. (생략)

7.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의 운영

<신설>

8. ~ 18. (생략)

19. ~ 33. (생략)

⑪ (생략)

⑫ 지역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신설>

⑬ 지역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신설>

⑭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중소기업자 -----
--

18.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운영

7. ~ 17. (현행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19. ~ 33.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18. (현행과 같음)

19.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⑬ -----
-----.

1. ~ 21. (현행과 같음)

22.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⑭ (현행과 같음)

⑮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제12항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생략) ②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총괄과, 기술창업과, 창업촉진과, 창업생태계조성과, 벤처혁신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회수관리과, <u>벤처혁신기반과, 기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u> 및 미래산업전략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창업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창업진흥전담조직의 관리</u>에 관한 사항 7. 8. (생략) 9. 창업정보의 제공·관리계획의 <u>수립·시행</u> 및 창업 관련	<u>중 제조혁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기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인력육성</u> ----- ----- ----- ----- ----- ----- ----- ----- -----.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창업진흥원</u> ----- ----- 7. 8. (현행과 같음) 9. ----- -- <u>수립·시행</u>
--	---

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신 설>

10. ~ 18. (생 략)

19. (생 략)

20. 창조경제 온라인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1. · 22. (생 략)

④ 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한·중 현지거점 육성·운
영·관리·지원 및 기술사업
화 활성화

<신 설>

11. · 12. (생 략)

<신 설>

⑤ 창업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창업지

10.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의 구
축·운영

11. ~ 19. (현행 제10호부터 제
18호까지와 같음)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삭 제>

21. · 22.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2. 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 11. (현행 제11호 및 제12
호와 같음)

13.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
-----.

<삭 제>

<삭 제>

<u>원에 관한 사항</u>	
<u>3.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사업화</u> <u>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4.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정보망</u> <u>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5. 지식서비스 거래 활성화에</u> <u>관한 사항</u>	<u><삭 제></u>
<u><신 설></u>	<u>11.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u> <u>교육계획의 수립·시행</u>
<u>6. ~ 11. (생 략)</u>	<u>2. ~ 7. (현행 제6호부터 제11</u> <u>호까지와 같음)</u>
<u><신 설></u>	<u>12.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u> <u>화 확산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3.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u> <u>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u>
<u>12. · 13. (생 략)</u>	<u>8. · 9. (현행 제12호 및 제13호</u> <u>와 같음)</u>
<u>14. 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u> <u>육성에 관한 사항</u>	<u>14.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u> <u>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u>
<u>15. (생 략)</u>	<u>10. (현행 제15호와 같음)</u>
<u>16. 창업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u>	<u>1. 예비창업자의 창업 촉진---</u>
<u>17. 그 밖에 지식서비스 중소기</u> <u>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u> <u>사항</u>	<u><삭 제></u>
<u>⑥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다음</u> <u>사항을 분장한다.</u>	<u>⑥ -----</u> <u>-----.</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5.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제></u>
<u>6. · 7. (생략)</u>	<u>5. · 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u>
<u>8.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u>	<u>7. -----</u> <u>지원-----</u> <u>-----</u>
<u>9. ~ 11. (생략)</u>	<u>8. ~ 10.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u>
<u>12.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u><삭제></u>
<u>13. · 14. (생략)</u>	<u>11. · 12.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u>
<u><신설></u>	<u>1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6. 창조경제 온라인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 및 운영</u>
⑦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설></u>	<u>16.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법 부처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u>
<u><신설></u>	<u>17.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신 설>

⑧ (생 략)

⑨ 투자회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신 설>

⑩ 벤처혁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2.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1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 농·공·상 상생 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산·학·연 지역 연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삭 제>

사항

7. 중소 농·공·상 상생 협력
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9.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및 문
화 확산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
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1. 부 내 산·학·연 연계 강화
를 위한 시책의 총괄·조정

12. 산·학·연 지역 연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에 관
한 사항

⑪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 략)

23.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
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

25.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
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⑩ -----
-----.

1. ~ 22. (현행과 같음)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
술기반 분야에 대한 예측·분
석 및 육성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

<u>26.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u>27.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u> ⑫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u>3.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술기반 분야에 대한 예측·분석 및 육성</u> 4. (생략) <u>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u> <u>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u> <u>7.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u> 8. (생략) <u>9.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u>	<u>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u> <u>26.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u> <u>27.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u> ⑪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 제4호와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4. (현행 제8호와 같음) <u><삭 제></u>
---	---

<신 설>

10. ~ 14. (생 략)

15. ~ 18. (생 략)

19. ~ 27. (생 략)

<신 설>

1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
정에 관한 사항

5. ~ 9. (현행 제10호부터 제14
호까지와 같음)

10. ~ 13. (현행 제15호부터 제
18호까지와 같음)

15. ~ 23. (현행 제19호부터 제
27호까지와 같음)

⑬ 인력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인력
수급 효율화 및 인력의 양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초·중급 연구인
력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파견·채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기술사관육성사업에 관한 사
항

7.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영마이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관련 학과 및 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관련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13. 중소기업 인력 활용·공급 동향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1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
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인
식 개선, 취업 연계에 관한 사
항 및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19.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중소
기업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0.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
에 관한 사항

21. 퇴직인력 및 고령인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23. 중소기업과 소관 공공기관
의 채용 확산을 위한 지원 정
책의 수립·시행

24. 기능인력의 취업지원에 관
한 사항

2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
상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⑭ (생 략)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생 략) ②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 정책과, <u>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혁신과, 시장상권과, 상생협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및 거래환경개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u> ③ (생 략) ④ <u>소상공인지원과</u>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u>소상공인 협업화 지원</u> <u><신 설></u> 6. ~ 16. (생 략) 17.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소상공인경영지원과,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육성과</u>-----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소상공인경영지원과</u>장-----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16. <u>업종별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u> 5. ~ 15. (현행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17. (현행과 같음) 18. <u>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u> 19. <u>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u>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0.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
로 지원

21.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
사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의 운용

23.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의 운영

24.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지도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5.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2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여
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
성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기본계획 수립

3.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운영

4.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거점

마련

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채널
별 입점 지원
6.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지원
7.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관련
통계 · 실태조사 · 분석, 성과
관리 및 점검
8.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9.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
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 조
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신기술 활용 지원
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업종별 스마트상
점 적용기술 발굴 · 보급에 관
한 사항
13.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동향
조사
14.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기 등
을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용 활
성화를 위한 홍보 · 마케팅에

⑤ 소상공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종별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업종별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3. ~ 2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관한 사항

16.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법인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상품권 확산에 관한 사항

18.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비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지역상권과장-----
-----.

<삭 제>

<삭 제>

21.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1. ~ 19. (현행 제3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22.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23.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지원

2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제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22. (생 략) 23.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4.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26.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28.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29.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30.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⑥ 시장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u>도에 관한 사항</u> 26. 지역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 27. 상권활성화 구역 실태조사 28. 지역상권 상인 교육 전문가인력 양성 20. (현행 제22호와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⑦ 전통시장육성과장-----
--	--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지원

17. 상점가 진흥 및 전문상가단
지의 건립 지원

18. ~ 24. (생 략)

⑦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신 설>

⑧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2.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의 운영

4.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영

5.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6.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

-----.

1.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6. ~ 22. (현행 제18호부터 제
24호까지와 같음)

⑧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
원

<삭 제>

립

7.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용

8. 사업조정심의회 의 운영 · 지원

9.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 · 지원

10.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 지원

11.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12.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13.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14.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중 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신 설>

⑨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영

4.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6.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용
7.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지원
8.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지원
9. 일시정지제도의 운영·지원
10.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11.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
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12.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13.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의 수립
14.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
회 운영·지원
15.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
제에 관한 사항
16.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동
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 보완
요청등
17.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
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단체

⑨ (생 략)	<u>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 료 조사</u> <u>18. 대기업등에 대한 생계형 적 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 는 확장의 예외 승인</u> <u>19.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 종 지정 준수여부 실태조사</u> <u>20.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대기 업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 행강제금 부과</u> <u>21. 생계형 적합업종 영위 대기 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권고 및 권고 불이행 공표</u> <u>22.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 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u>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46</u>	<u>465</u>	+19
·	·	·	
·	·	·	
일반직 계	<u>440</u>	<u>459</u>	+19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7</u>	<u>9</u>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7</u>	<u>26</u>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0</u>	<u>39</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u>155</u> .	<u>159</u> .	+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26</u>	<u>134</u>	+8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	<u>21</u> .	<u>27</u> .	+6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전산 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운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비서) .	8 <신 설> .	<u>1</u> .	+1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46</u>	<u>465</u>	+19
·	·	·	
·	·	·	
일반직 계	<u>440</u>	<u>459</u>	+19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7</u>	<u>9</u>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7</u>	<u>26</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0</u>	<u>39</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17</u>	<u>129</u>	+1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u>18</u>	<u>24</u>	+6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전산 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8		
<u>운전서기 또는 별정직</u> <u>8급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	·	·	
·	·	·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16</u>	<u>403</u>	-13
일반직 계	<u>416</u>	<u>403</u>	-13
·	·	·	
·	·	·	
행정사무관	<u>5</u>	<삭 제>	-5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8</u>	<삭 제>	-8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19</u>	<삭 제>	-19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32</u>	<삭 제>	-32
행정주사	<u>20</u>	<삭 제>	-20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28</u>	<삭 제>	-128
행정주사 · 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2</u>	<삭 제>	-12

<u>행정주사보</u>	<u>10</u>	<u><삭 제></u>	-10
<u>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u>	<u>17</u>	<u><삭 제></u>	-17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u>	<u>18</u>	<u><삭 제></u>	-18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u>	<u>27</u>	<u><삭 제></u>	-27
<u>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u>10</u>	<u><삭 제></u>	-10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u>	<u><신 설></u>	<u>64</u>	+64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u>	<u><신 설></u>	<u>154</u>	+154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u> 또는 <u>공업연구사</u> .	<u><신 설></u> .	<u>76</u> .	+76
<u>행 정 서 기 · 방 송 통 신 서 기</u> <u>또는 공업서기</u> .	<u>34</u> .	<u><삭 제></u> .	-34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u> <u>· 통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u> .	<u><신 설></u> .	<u>33</u> .	+33
<u>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u> .	<u>21</u> .	<u><삭 제></u> .	-21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전산 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u> .	<u><신 설></u> .	<u>21</u> .	+21
.	.	.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18</u>	<u>405</u>	-13
일반직 계	<u>418</u>	<u>405</u>	-13
·	·	·	
·	·	·	
행정사무관	<u>5</u>	<삭 제>	-5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8</u>	<삭 제>	-8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19</u>	<삭 제>	-19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32</u>	<삭 제>	-32
행정주사	<u>20</u>	<삭 제>	-20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28</u>	<삭 제>	-128
행정주사 · 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2</u>	<삭 제>	-12

<u>행정주사보</u>	<u>10</u>	<u><삭 제></u>	-10
<u>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u>	<u>17</u>	<u><삭 제></u>	-17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u>	<u>18</u>	<u><삭 제></u>	-18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u>	<u>27</u>	<u><삭 제></u>	-27
<u>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u>10</u>	<u><삭 제></u>	-10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u>	<u><신 설></u>	<u>67</u>	+67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u>	<u><신 설></u>	<u>151</u>	+15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u> 또는 <u>공업연구사</u> .	<u><신 설></u> .	<u>76</u> .	+76
<u>행 정 서 기 · 방 송 통 신 서 기</u> <u>또는 공업서기</u> .	<u>34</u> .	<u><삭 제></u> .	-34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u> <u>· 통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u> .	<u><신 설></u> .	<u>33</u> .	+33
<u>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u> .	<u>21</u> .	<u><삭 제></u> .	-21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전산 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u> .	<u><신 설></u> .	<u>21</u> .	+21
.	.	.	